



## 정책 :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Policy: Safe Environments for Children  
(Korean)

시행 일자 : 2004년 7월1일

1차 개정일 : 2008년 4월 4일

2차 개정일 : 2015년 10월 1일

개정본 시행일 : 2015년 11월1일



피츠버그 교구



나는 위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 했으며, 그것은 진실이고 정확하다.

판매 회사나 독립 계약자의 관리자급 직원의 서명

이름과 서명

상품 /서비스 판매자 또는 독립 계약자의 이름

판매자 또는 독립 계약자의 주소

판매자 또는 독립 계약자의 전화번호

판매자 또는 독립 계약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선서하고 서명한다.

\_\_\_\_ 일 \_\_\_\_ 월, 20\_\_년

(인증) 공증인

##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정책

### 목차

목적 .....	2
적용 .....	2
정의	
교회 관계자 .....	2
어린이,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 .....	3
교구 .....	3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 담당자 .....	3
정책 및 절차	
필요한 이력 조회 및 인증 .....	3
카톨릭 학교 직원 .....	5
정책 이행 확인의 책임 .....	6
미래의 교회 직원 .....	7
인증 갱신 .....	7
지속적인 이행 준수 .....	7
이력 조회 비용 부담의 책임 .....	8
이력 조회 결과의 전달 .....	8
고용 거부에 대한 근거 .....	8
독립 계약자 .....	10
부록:	
A: 교구에서 실시하는 범죄 이력 조회 .....	11
B: 자원 봉사자 정보 공개 요청 서류 양식 .....	12
C: 미성년자를 위한 정보 공개 신청 양식 .....	15
D: 필수 보고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할 사람들 .....	18
E: 기록 평가 프로세스 .....	19
F: 문제 예상자를 어린이와 격리 시 사용 편지 양식 .....	21
G: 주/연방 범죄 이력 조회 의무 이행을 위한 진술서 .....	22

## 목적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이가 어린이들과 접촉하는 것이 합당한 지를 평가하고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과 이력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모든 교회에서 일하는 인원들은 아래에 정한 인증과 이력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력 조사 결과 8쪽과 9쪽에서 정한 자격 상실에 충분한 범죄를 저지른 결과가 나온 경우 해당 인원은 채용 요건과 근무 적합 요건에 더이상 부합되지 않는다.

교구에서는 최소한 이런 정책을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부록 A에 기술된 이들에게 적용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앞서 말한 이 정책의 목적과 아래에 기술된 정신에 부합하기 위하여 주임 사제와 본당 관리자들은 부록 A에 기술된 사람들 이외에도 이 정책이 적용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정책 적용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주임 사제와 본당 관리자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이 정책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 정의

### 교회 관계자

- 주교, 사제 (현역, 은퇴), 교구에서 위촉한 종교직에 있는 남성과 여성들, 종신 부제, 신학생;
- 교구 직원, 가톨릭 학교 직원 및 본당 직원, 14살 이상의 어린이 복지과 어린이와 접촉하기 위해 교구에서 유급으로 정한 자리에 지원하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 학교의 모든 자원 봉사자

- 완료된 이력 조회, 정부에 기록된 범죄 기록, 정부에서 얻은 답변과 대상 직원에 대한 당사의 파일에 보존 되어야 할 원본 또 사본은 고용주와 다른 대리인이 교구/학교/유치원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펜실베니아 주 경찰 범죄 신고서
  - 펜실베니아 복지사업부(아동학대) 보고서
  - FBI 범죄 경력 보고서 (지문채취)
- 나는 범죄 보고서에 범죄 기록이 공개 되거나 어린이 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위에 명시된 교구/학교/유치원에 즉시 알리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나는 만약 교구/학교/유치원에서 모든 직원의 범죄 보고서와 어린이 학대 보고서의 복사본을 요청한다면 이것을 제공 해야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나는 모든 범죄 보고서와 어린이 학대 보고 검사가 5년 이내의 것이야 함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고용주와 나는 신규 또는 추가 고용인 또는 위임된 대리인에게도 위에 언급된 이력조회 평가를 적용해야 하는 지속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 고용주와 나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교구/학교/유치원과의 사업 관계 단절을 초래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 교구/학교/유치원과의 사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기 요구 사항을 즉시 준수하고 교구/학교/유치원이 이 진술서와 여기에 명시된 보증 및 진술을 믿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을 교구/학교/유치원에 보장한다.

## 부록 G

### 주/연방 범죄 이력 조회 의무 이행을 위한 진술서

교구/학교/유치원 이름

교구/학교/유치원 주소

교구/학교/유치원의 도시, 주, 우편번호

\*\*\*\*\*

펜실베이니아 주의)

) SS:

카운티의 \_\_\_\_\_)

주/연방 범죄 이력 조회 의무 이행을 위한 진술서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선서한 서명인은 적법하게 선서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참임을 증언한다:

- 나는 관리자급 직원이며, 위에 명시된 교구/학교/유치원에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 또는 독립 계약자의 정식으로 승인된 대리인이다
- 나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이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고용주로 부터 위임을 받았고 고용주가 이 진술서의 요구사항과 조건. 조항을 따르도록 하게 한다.
- 고용주와 나는 위에 명시된 교구/학교/유치원과 관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과 교구/학교/유치원의 어린이, 청소년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 가능한 고용인의 이력 조회가 완료되어야 함을 인지한다.

- 어린이와 접촉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자원 봉사자

### 어린이, 청소년 또는 마성년자

- 18세 미만의 모든 이.

### 교구

- 모든 본당, 가톨릭 학교, 교구에서 책임이 있는 기관을 포함한 피츠버그 가톨릭 교구

###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 관리자

- 주임 사제, 가톨릭 학교 교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위임 받아 미국 주교 협의회 (USCCB)에서 정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현장 및 교구의 "안전한 환경"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는 자 .

## 정책 및 절차

**필요한 이력의 조회 및 인증** 아래의 범죄 이력 조회는(이하 이력 조회라 함) 모든 교회 관계자가 봉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1. 펜실베이니아 주립 경찰의 범죄 이력 조회
2. 펜실베이니아 주 인사 부서의 아동 학대 이력 조회(아동 학대)
3. 연방 조사국 (FBI)의 범죄 이력 조회 (지문 인식)

자원 봉사자의 연방 조사국의 범죄 이력 조회의 면제의 경우

만일 봉사자가 과거 10년 동안 펜실베이니아 주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8쪽과 9쪽에 기술한 "자격 상실"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으며 봉사자 정보 공개 양식 (부록 B)에 서명한 경우에 해당 자원 봉사자는 연방 조사국 범죄 이력 조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거 10년 동안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자원 봉사자는 연방 조사국 범죄 이력 조회를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주한 이래 최소 1회 실시하고 그 이후 자원 봉사자 정보 공개 양식에 서명 완료하여야 한다.

### 미성년 자원봉사자의 연방 조사국 범죄 이력 조회의 면제 경우

아래 사항의 경우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직원은 연방조사국 범죄 이력 조회를 받을 필요가 없다 :

- 과거 10년 동안 미성년 직원이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그리고
- 미성년 직원과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미성년 직원의 정보 공개 요청 서류 (첨부 C)에 미성년 직원이 아동 학대 및 8쪽과 9쪽에 기술된 "자격 상실 요건"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서명한 경우 .

### 성인 학생의 범죄 이력 조회 면제의 경우

아래 사항이 충족될 경우에 18살 이상의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 활동과 관련한 자원 봉사를 하면서 미성년자와 접촉할 경우 범죄 이력 조회를 할 필요가 없다.

- 현재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 책임이 없으며
- 학교 시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며
- 학생이 등록된 학교에서 후원을 하는 행사이며
- 행사가 미성년자 보호 서비스를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교구 정책은 또한 아래 사항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 데이터베이스 지원서

모든 교회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 지원서를 작성 완료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지원서는 교구 홈페이지 [www.diopitt.org](http://www.diopitt.org)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다.

### 부록 F

### 혐의자를 아동과 격리 시킬때 사용하는 편지 양식

교구 이름

날짜

Mr. /Ms. \_\_\_\_\_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당신이 요청한 이력 조회에서 범죄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정보에 의하면 당신 교구에 있는 혐의자 \_\_\_\_\_로 부터 격리 되어야 할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교구내 모든 성직자로 부터의 격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_\_\_\_\_로 부터 격리 조치합니다.

이 결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교구 사무소와 협의한 후 신중히 결정되었습니다. 사목 활동의 책임중 많은 부분은 우리 교구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극비로 진행되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이 편지 아래의 서명에 의해 귀하가 이 격리 조치에 대해 통보 받았음을 증명하고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귀하가 그 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더이상 교구에 성직자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구 모든 구성원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심어린 사랑안에서,

이름

나는 (이름) \_\_\_\_\_, 이 편지의 사본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서명

날짜

F 제한 결정 통보 양식 참조)

- 만일 발견된 결과가 사소한 경우 (예를 들어 교통 법규 위반) 그리고 지원자의 의무와 관련 되지 않은 경우, 지원자는 “승인” 결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 안전한 환경 코디네이터는 발견된 모든 결과를 주임 신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주임 신부 또는 프로그램 책임자는 교구에서 지정한 상태 보다 (예를 들어 교구에서 “제한” 결정을 한 지원자를 “거부” 한다거나) 더욱 엄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교구에서 결정한 상태보다 더 관대한 상태를 적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교구에서 “거부”한 지원자를 “제한” 상태로 완화 시키는 경우)
- 만일 주임 사제 또는 지원자가 보고서에 발견된 결과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평가 결과 처리 프로세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는 서면으로 관리 절차를 감독하는 교구 사무실에 결과를 통보 받은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구 관리 절차 감독 사무실의 결정은 언제나 최종적이다.

5. 교구 사목 원칙의 인식

모든 교회 관계자는 교구 사목 원칙에 대한 내용을 수령하고, 설명을 들은 후, 수령 확인에 대한 전자 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어린이 학대 신고 및 펜실베니아 주의 어린이 보호 서비스에 대한 인식.

모든 교회 관계자는 아동 학대 신고 및 펜실베니아 주의 어린이 보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수령하고, 설명을 들은 후 수령 확인에 대한 전자 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하느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Virtus®) 교육

모든 교회 관계자는 교구에서 지원하는 교육이나 Virtus Online 교육 프로그램을 봉사 시작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www.diopitt.org](http://www.diopitt.org) 에 접속한 후 Protecting God’s Children Workshop 링크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8. 의무 보고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아래 사람들은 펜실베니아 주법에 의하여 의무 보고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봉사 시작 후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모든 성직자, 교직원, 학교 자원 봉사자, 어린이와 주기적으로 접촉

<b>카톨릭 학교 직원</b>
위에서 기술한 이력 조회와 인증에 추가하여 피츠버그 교구에 속한 카톨릭 초,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직원들은 Act 24 Clearance를 취득해야 하고 PA Act 168과 Act 126에 서술한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필수 보고자 교육은 Act 126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한번의 5년간 교육 주기 요구조건을 만족 시킨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412-456-3090에 문의 바람.

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모든 직원 및 자원 봉사자들.  
(부록 D 참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www.diopitt.org](http://www.diopitt.org) 에 접속한 후 Mandated and Permissive Training 링크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 이력 조회 및 인증에 대한 이수 책임

교구의 총서기 (General Secretary) 또는 주임신부/ 본당 Life Collaborator/ 종신 부제/ 관리자/ 학교 교장/ 교직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책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을 보좌하기 위해 교구 내 모든 본당, 학교, 기관은 모든 교회 관계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력 조회 및 인증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감독할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임명하도록 한다. 서명된 목회 활동 수칙, 의무 보고자 및 아동 보호 서비스 법 브루슈어의 수령 확인, Protecting God’s Children 교육 참가 확인서, 필수 교육 코스 수령을 비롯한 정책의 이수를 증명하는 모든 자료는 지명된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교구 데이터베이스에 정책 준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연간 인증

본당 주임 신부/ Life Collaborator / 종신 부제 / 가톨릭 학교 교장 / 관리자는 매년 본당, 학교, 기관이 교구의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했다는 확인서를 작성, 서명하여야 한다.

### 제한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정책 준수에 대한 진행 사항을 관리하는 교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편집 권한은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가톨릭 학교 교장 (또는 교장의 대리), 교리 관리자에 제한한다. 데이터베이스 편집 권한은 비밀 유지 및 데이터 품질 유지에 대한 목적으로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DB 편집 권한은 관리 책임의 일부이며 이러

## 부록 E 기록 평가 프로세스

-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무소의 관리자는 이력 조회로 발견된 모든 기록과 날자를 검토할 것이다.
- 만일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관리자는 원본 출처의 명확한 확인 또는 재 제출을 위해 이력 조회 담당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 조회 대상자의 행위와 어린이와의 접촉 정도가 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 보호 코디네이터에게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 이력 조회를 통해 (정신적, 성적, 육체적) 어린이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조회 대상자는 “불합격 (거부)”을 받아야 하고 피츠버그 교구와 연관된 어떤 부서나 기관 내에서 고용 또는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 만일 발견된 기록이 좀더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음주운전, 통제된 약물의 불법적인 사용 등) 그리고 범법 사실이 최근 (5년 이내) 또는 범법 사실이 한번 이상인 경우 (기간과 상관 없이), 해당 문제는 대리 주교 또는 그에 의해 위촉된 이, 법무 부서의 대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책임자, 성직을 담당하는 대리주교 또는 그에 의해 위촉된 이, 전교와 카톨릭 교육 사무국 위원, 본당 라이프 프로그램 담당 또는 그에 의해 위촉된 이, 교구 대리 코디네이터로 구성되는 심의 위원회에 상정된다. 심의 위원회는 “승인”, 또는 “거부” 또는 “제한” 결정을 내린다. 주임 사제와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심의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을 것이다. 만일 심의 위원회의 결정이 “제한”인 경우, 해당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는 서면으로 “제한” 결정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사본은 안전한 환경 코디네이터에 의해 따로 보관 되어야 한다. (첨부

## 부록 D

필수 보고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할 사람들  
(이와 동등한 업무 포지션을 포함하여)

- 복사단 담당 - 성인
- 운동 코치/자원 봉사자
- 버스 운전기사
- 카페테리아 직원
- 교리 문답 교육 담당
- 교리 문답 교사, 전도사
- 교리 문답 교사 보조
- 스카우팅 리더 / 자원 봉사자
- 어린이 인솔자
- 사제
  - 종신 부제 -종신/임시
  - 교구 주교
  - 교구에서 서품 받은 사제 또는 교구내의 은퇴한 사제
  - 교구에서 서품 받지 않은 교구 사제, 교구에서 업무를 하는 또는 거주하는 사제
  - 신학생
  - 교구에서 위촉한 종교직을 갖은 사람.
-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 룸,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
- 음악 담당 스태프 (유급 직원, 자원 봉사자)
- 본당 간호사
- 본당 "안전한 환경" 프로그램 담당
- 본당 소셜 담당
- 본당 사목위원
- 건강 복지 담당
- 어린이 놀이터 보호자
- 유치원 관리자 / 보조

한 권한을 지정된 자 이외의 사람에게 주는 행위는 중대한 문제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처할 사유이다.

### 미래의 교회 직원

미래의 교회 관계자 (유급직 또는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고용 결정 및 근무 시작 이전에 지정된 범죄 이력 조회 및 인증을 마쳐야 한다. Protecting God's Children 교육 및 의무/허가 교육은 근무 시작 후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모든 미래 및 현재의 교회 관계자는 범죄 이력 조회 결과에 따라 고용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인증 갱신

펜실베이니아 주립 경찰 범죄 이력 조회, 펜실베이니아 인사부 인증, 연방 조사국 범죄 이력 조회 결과는 매 5년마다 갱신 되어야 한다. 자원 봉사자 정보 공개 신청서는 관련된 교회 관계자에 의해 매 5년마다 서명되어야 한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자원 봉사자 (그러나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연방 조사국 보고서를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주한 이래 1회 발급 받고 자원 봉사자 면제 양식을 매 (5)년 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 준수 의무의 계속

모든 교회 관계자는 8쪽에 기술된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에 의해 체포 또는 판결이 선고, 또는 펜실베이니아 주 데이터베이스에 아동 성범죄자로 기록 될 경우 7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고용자 또는관리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자원 봉사자의 고용 결정에 책임이 있는 고용 책임자,관리자는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의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 체포 또는 판결이 선고, 또는 직원/자원 봉사자가 아동 학대에 연루된 보고서에 이름이 올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 경우 반드시 자원 봉사 희망자에게 새로운 범죄 이력 조회 결과를 요구하여야 한다.

## 범죄 이력 조회 비용 부담의 책임

모든 미래의 교회 관계자(직원)는 고용에 필요한 범죄 이력 조회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책임을 진다. 유급 교회 직원의 이력 조회 갱신 비용은 본당 또는 교구의 책임이다. 학교는 인사 정책의 일부로 교직원들의 범죄 이력 조회 갱신 부담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당, 학교, 교구 사무실은 모든 자원 봉사자의 이력 조회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이력 조회 결과의 이전

자원 봉사자를 제외한 모든 교회 직원 : 이력 조회 결과는 이력 조회 결과가 유효할 때까지 교구의 다른 부서로 이전할 수 있다. 교구의 부서가 아닌 경우 이력 조회 결과는 공유될 수 없다.

모든 자원 봉사자 : 지난 5년 (60개월) 사이에 범죄 이력 조회를 마친 자원 봉사자는 교구 외부 기관으로 부터 이력 조회 결과를 이전 해올 수 있다.

## 고용 거부의 근거

### •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되는 범법 사항

현직 또는 미래의 교회 관계자는 아래에 기술된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 고용되거나 자원 봉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 아래 기술된 펜실베니아 통합 법령 18항에 포함된 범죄 또는 이와 동등한 다른 주, 지역, 외국에서의 범죄:
  - 25 장 (살인에 관련한)
  - 2702조 (가중폭행에 관련한)
  - 2709조 (스토킹에 관련한)
  - 2901조 (납치에 관련한)
  - 2902조 (불법적인 감금에 관련한)

여, 서비스, 봉사 활동을 거부할 근거가 되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 또는 범법자로 보고서 또는 주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올랐을 것으로 생각되는 근거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경우 즉시 내게 주정부 인사 부서, 펜실베니아 주립 경찰, 연방 수사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 이력 조회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력 조회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고용 당사자, 프로그램, 봉사활동의 관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는 만일 내가 고의적으로 위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3급 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해하고 자원 봉사 직책 승인 거부를 포함한 문책의 대상이 됨을 이해합니다.

나는 고용 결정의 책임을 지는 관리자 또는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의 관리자가 나의 이력 조회 결과 사본을 보관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여기서 기술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올바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맹세, 확인합니다. 만일 거짓된 맹세일 경우 4903 범죄 세부 조항에 기술된 경범죄에 해당함을 이해합니다.**

**해당 되는 항목을 체크하세요:**

- 나는 지난 10년간 계속적으로 펜실베니아 주 주민이었습니다.
- 펜실베니아에 지난 10년간 계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았으며 펜실베니아에 거주한 이후 미 연방 조사국의 지문 인증을 받았고 그 결과 사본을 고용주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이름	서명
----	----

---

부모/보호자 이름	부모/보호자 서명
-----------	-----------

---

증인 이름	증인 서명
-------	-------

- 3122조 1항 (법령에 의한 성폭행에 관련한).
- 3123조 (비자발적인 일탈적 성행위에 관련한).
- 3124조 1항 (성폭행에 관련한).
- 3125조 (가중 처벌 성추행에 관련한).
- 3126조 (성추행에 관련한).
- 3127조 (성기 노출에 관련한).
- 4302조 (근친상간에 관련한).
- 4303조 (어린이의 사망을 숨기는 행위에 관련한).
- 4304조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련한).
- 4305조 (영아의 안전에 관련한).
- 5902(b)조 (매춘에 관련한).
- 5903(c)조 or (d)조 (음란물 상영 및 공연에 관련한).
- 6301조 (미성년자 약취에 관련한).
- 6312조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또는 연방법 또는 다른 주법에 따른 동등한 범죄.

나는 과거 5년 이내에 Act 64-1972 (통제된 약물, 의약품에 관련한 법령)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일 과거 5년 이내에 위에 기술된 어떠한 범죄와도 연관된 적이 있거나 어린이 학대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경우 고용 계약이 해지 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일 내가 위에 기술된 어린이 보호 서비스 법에 의해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봉사를 거부 당할 근거를 제공하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또는 범법자로 보고서 또는 주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오른 경우, 72시간 이내에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 합니다.

나는 또한 고용 결정의 책임을 지는 관리자 또는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의 관리자가 어린이 보호 서비스 법에 의거하여 고용, 프로그램의 참

- 3121조 (강간에 관련한)
- 3122조 1항 (법령에 의한 성폭행에 관련한)
- 3123조 (비자발적인 일탈적 성행위에 관련한)
- 3124조 1항 (성폭행에 관련한)
- 3125조 (가중 처벌 성추행에 관련한)
- 3126조 (성추행에 관련한)
- 3127조 (성기 노출에 관련한)
- 4302조 (근친상간에 관련한)
- 4303조 (어린이의 사망을 숨기는 행위에 관련한)
- 4304조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련한)
- 4305조 (영아의 안전에 관련한)
- 5902(b)조 (매춘에 관련한)
- 5903(c)조 or (d)조 (음란물 상영 및 공연에 관련한).
- 6301조 (미성년자 약취에 관련한)
- 6312조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또는 연방법 또는 다른 주법에 따른 동등한 범죄)
- 과거 5년 이내에 1972년 4월14일 (P.L. 233, No. 64)에 발효된 통제 의약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행위.
- 어린이 약취 및 학대에 대한 위반자로 주립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경우.
- **자원 봉사자의 승인이 의문스러운 경우**  
범죄 이력 조회 결과가 어린이에게 위협이 되는 지 여부가 확실 하지 않은 경우 **부록 E**에 따라야 할 절차가 기록 되어 있다. USCCB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현장 필수 조항에 따라 판결된 결과가 어린이에게 위해가 가는 지의 여부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어린이 보호에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답변 되어야 한다.

- 판결 결과가 어린이에게 해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 해당 개인은 그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업무를 시작하여서는 안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본당 직원의 누구라도 이 정책에 관련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질문은 교구, 어린이, 청소년 보호 사무실 책임자에게 해야 한다.
- **고용 계약 해지에 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교회 직원이 정의된 절차를 지켜지 않은 경우, 고용 관계의 해지가 될 근거가 되며 해당 당사자는 어린이와 관련한 어떠한 교회의 행사에도 자원 봉사자로 참여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오직 교구 주교만이 교회 재판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일 교회법에 의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정책을 위반할 경우 사무 총장이나 그에 의해 지정된 사람은 교구 정책과 일반 교회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독립 계약자**

독립 계약자 예를 들어 환경 미화 서비스, 주방 서비스 등 교구, 학교, 본당, 교구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직접 접촉을 할 수 있는 독립 계약자는 모든 필요한 범죄 이력 조회 결과를 취득해야 하며 **부록 G**에 수록된 주 및 연방의 범죄 이력 조회를 마쳤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C**  
미성년자를 위한 정보공개 신청 양식

**피츠버그 교구**  
**미성년자를 위한 정보 공개 신청 양식**  
**어린이 보호 서비스 법 23 Pa. C.S. Section 6344.2에 의거**  
**(어린이와 접촉하는 미성년 자원 봉사자를 위하여)**

나는 유급 직책을 찾으면서 연방 조사국을 통한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음을 서약/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 나의 나이는 14세와 17세 사이에 있으며
- 지난 10년간 펜실베니아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만일 펜실베니아에 지난 10년간 거주하지 않은 경우 펜실베니아에 거주한 이후 미 연방 조사국의 지문 인증을 받았고 그 결과 사본을 고용주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나는 지난 5년이내에 어린이 보호 서비스법에 의해 정의된 어린이 학대와 관련한 보고서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음을 맹세/확인합니다.

나는 펜실베니아 포괄 법령 18조에 명시된 범죄 또는 미국, 미국령, 미국의 다른 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외국 또는 펜실베니아 주의 과거 법령에 의한 유사한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없음을 맹세/확약하는 바입니다 :

- 25 장 (살인에 관련한).
- 2702조 (가중폭행에 관련한).
- 2709조 (스토킹에 관련한).
- 2901조 (납체에 관련한).
- 2902조 (불법적인 감금에 관련한).
- 3121조 (강간에 관련한).

펜실베니아 주립 경찰, 연방 수사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 이력 조회 결과를 즉시 제출 해야 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력 조회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고용 당사자, 프로그램, 봉사활동의 관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는 만일 내가 고의적으로 위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3급 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해하고 자원 봉사 직책의 승인 거부를 포함한 문책의 대상이 됨을 이해합니다.

나는 고용 결정의 책임을 지는 관리자 또는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의 관리자가 나의 이력 조회 결과 사본을 보관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여기서 기술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올바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맹세, 확인합니다. 만일 거짓된 맹세일 경우 4903 범죄 세부 조항에 기술된 경범죄에 해당함을 이해합니다.

이름 \_\_\_\_\_ 서명 \_\_\_\_\_

증인 \_\_\_\_\_ 증인 서명 \_\_\_\_\_

일자 \_\_\_\_\_

부록 A		
이력 조회 대상의 업무 종사자 (이와 동등한 업무 담당을 포함하여)		
1	복사단 업무 담당 성인	33 펀드 모금 담당 / 자원 봉사자
2	운동 코치 / 자원 봉사자 - 학교/CYO	34 하우스키퍼/ 조리사
3	운동 트레이너	35 환경 미화 / 시설 담당
4	연령회 담당 / 자원 봉사자	36 독서 담당
5	버스 운전 기사	37 전례 예술 및 환경 담당 / 자원 봉사자
6	업무 과장 /장부 기록 담당	38 오르간 연주자
7	주방 직원	39 장애인 지원 담당
8	캠퍼스 미니스터	40 본당 법률 심의 담당
9	성가대 선창자	41 본당 직원
10	교리 교육 담당	42 본당 재정 위원회
11	교리 문답 교사	43 본당 간호사
12	교리 문답 교사 보조	44 본당 "안전한 환경" 담당
13	교리 디렉터	45 본당 사목위원
14	스카우팅 리더 / 자원 봉사자	46 본당 소셜 담당
15	어린이 인솔자	47 본당 홍보 담당
16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 룸,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	48 사목 담당
17	성가대장 (보컬/벨)	49 건강 복지 담당
18	성가대원 -보컬/벨	50 어린이 놀이터 보호자
19	전교부장	51 유치원 직원
20	전례부장	52 유치원 자원 봉사자
21	종신부제-종신/임시	53 난민 지원 담당/ 자원 봉사자
22	교구 주교	54 종교인을 위한 프로그램 담당
23	교구에서 서품 받은 사제 또는 교구내의 은퇴한 사제	55 생명에 대한 존중 프로그램 담당 /자원 봉사자
24	교구에서 서품 받지 않은 교구 사제, 교구에서 업무를 하는 또는 거주하는 사제	56 아웃리치 프로그램 담당 / 자원 봉사자
25	교구 직원	57 성구/성물 관리인
26	음악 디렉터	58 본당 비서/종교 교육/학교/청소년 담당
27	노인 프로그램 담당 / 자원 봉사자	59 신학생
28	초등/중등학교 운영 위원회	60 복사 교육 담당 /독서
29	초등/중등학교 직원	61 좌석 안내 담당, 안내 담당
30	초중/중등학교 자원 봉사자	62 청소년 담당
31	성체 특별 미니스터 담당	63 청소년 담당 자원 봉사자
32	가족 생명 담당/ 자원 봉사자	

## 부록 B

### 자원 봉사자 정보 공개 신청 서류 양식

#### 피츠버그 교구 자원 봉사자 정보 공개 신청 서류 양식

#### 어린이 보호 서비스 법 23 Pa. C.S. Section 6344.2에 의거 (어린이와 접촉하는 자원 봉사자를 위하여)

나는 자원 봉사자에 지원하며 연방 조사국 (FBI)의 범죄 이력 조회를 할 필요가 없음을 서약/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 본인이 지원하는 직책이 무보수 직책이며
- 지난 10년간 펜실베이니아에 계속적으로 거주했습니다.

나는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 서비스법에 정의된 범죄를 저지른 자로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음을 맹세/확인하는 바입니다.

나는 펜실베이니아 포괄법령 18조에 명시된 범죄 또는 미국, 미국령, 미국의 다른 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외국 또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과거 법령에 의한 유사한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없음을 맹세/확약하는 바입니다.

- 25 장 (살인에 관련한).
- 2702조 (가중폭행에 관련한).
- 2709조 (스토킹에 관련한).
- 2901조 (납체에 관련한).
- 2902조 (불법적인 감금에 관련한).
- 3121조 (강간에 관련한).
- 3122조 1항 (법령에 의한 성폭행에 관련한).
- 3123조 (비자발적인 일탈적 성행위에 관련한).
- 3124조 1항 (성폭행에 관련한).
- 3125조 (가중 처벌 성추행에 관련한).
- 3126조 (성추행에 관련한).

- 3127조 (성기 노출에 관련한).
- 4302조 (근친상간에 관련한).
- 4303조 (어린이의 사망을 숨기는 행위에 관련한).
- 4304조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련한).
- 4305조 (영아의 안전에 관련한).
- 5902(b)조 (매춘에 관련한).
- 5903(c)조 or (d)조 (음란물 상영 및 공연에 관련한).
- 6301조 (미성년자 약취에 관련한).
- 6312조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또는 연방법 또는 다른 주법에 따른 동등한 범죄.

나는 과거 5년 이내에 Act 64-1972 (통제된 약물, 의약품에 관련한 법령)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일 내가 어린이 학대에 관련한 보고서에 범법자로 이름이 오른 경우 또는 위에 기술한 어떠한 범죄에도 관련 되었거나 미국의 다른 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외국 또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과거 법령에 의한 유사한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봉사 (직무) 활동이 승인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 합니다.

나는 만일 내가 위에 기술된 어린이 보호 서비스 법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봉사를 거부 당할 근거를 제공하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또는 범법자로 보고서 또는 주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오른 경우, 72시간 이내에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 합니다.

나는 또한 고용 결정의 책임을 지는 관리자 또는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의 관리자가 어린이 보호 서비스 법에 의거하여 고용, 프로그램의 참여, 서비스, 봉사 활동을 거부할 근거가 되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범법자로 보고서 또는 주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올랐을 것으로 생각되는 근거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경우 즉시 주정부 인사부서,